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4. 12. 9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11월 25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10회(제2차 정례회) 제3차 위원회(2004. 12. 9.)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- 가. 개정이유
 -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구역이 법정동 2개동(영등포동, 신길동)과 행정동(영등포1동, 신길2동)의 경계에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어, 주민생활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동과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내용
 - 개정 연혁표 내용 중 다음 내용을 신설함.
 -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역 내 신길동 188-1의 27필지 1,359㎡를 영등포동에 편입
- 다. 참고사항
 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조
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예관규칙 제9조의 2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찬재)

- 현재 영등포동 577번지 일대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아파트 4개동 271가구를 건립한 것으로 총 사업면적이 13,541㎡로 이중 영등포1동 지역이 12,182㎡, 신길2동 지역이 1,359㎡로 신길동 지역이 일부 포함됨에 따라 동 명칭 및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,
-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측에서 동 경계변경신청서 제출시 첨부된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과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통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 신길동 27필지 1,359㎡를 영등포동으로 편입토록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2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11. 15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구역이 법정동 2개동(영등포동, 신길동)과 행정동(영등포1동, 신길2동)의 경계에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어, 주민생활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동과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개정 연혁표 내용 중 다음 내용을 신설함.
 -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역 내 신길동 188-1의 27필지 1,359㎡를 영등포동에 편입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조
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 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서울특별시와 합의
- 라. 승 인 : 서울특별시 승인 (2004. 10. 11.)
- 마. 입법예고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조례에 의거 입법예고
2004. 10. 14. ~ 11. 2.(20일간) - 별도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 [별표] 개정 연혁표에 다음 내용을 신설한다.

[별표] <개정 2004. 7. 20.>

개 정 연 혁 표

- 신길동 관할구역 중 188의 1번지, 188의 242~247번지, 188의 249~262번지, 188의 264~266번지, 188의 499번지, 188의 502~503번지를 영등포동에 편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신·구조문 대비표 =====

현 행	개 정 (안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영등포로 시점 영등포동2가 1-1번지에서 서측 35번지 이남지역을 영등포동3가에 편입한다. ○영등포로 중심부분 영등포동4가 1번지에서 시장로터리 53번지 이남지역을 영등포동3가에 편입한다. ○양평로 중심 영등포동442번지에서 487번 사이 동측지역을 영등포동3가에 편입한다. ○영등포동 31번지 9호 인접 소방도로 중심으로 남측 34번지 83호까지의 우측을 영등포동2가에 편입한다. ○올림픽대로변 영등포동 94번지 20호 및 29번지 68호 소방도로 중심 남측과 영등포로터리까지를 영등포동2가에 편입한다. ○영등포동 32번지 28호 우측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34번지 48호까지의 서측 중앙부분을 영등포동5가에 편입한다. ○경인로와 양평로 교차도로에서 영등포동 412번지 11호까지의 북측부분을 영등포동4가에 편입한다. ○올림픽대로변 영등포동 94번지 70호 및 94번지 8호 소방도로 중앙 서측부분에서 양평로 중앙부분 동측을 영등포동7가에 편입한다. ○당산동6가 중앙부분에 위치한 당산동을 당산동6가에 편입한다. 	<p>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 (안)
<p>○도림동 440번지를 기점으로 746번지의 3호 및 429의 1호를 연하는 남쪽지역 중 425번지 3호를 기점으로 한 칠로 이북지역을 문래동1가에 편입한다.</p> <p>○도림동 767의 1호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747의 1호 북단에 이르는 남쪽지역 중 칠로를 기준으로 문래동1가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문래동2가에 편입한다.</p> <p>○도림동 764의 1호 북단을 연하는 선을 기점으로 하여 790번지, 789번지, 805번지 남단을 연하는 남쪽지역 중 칠로를 기준으로 문래동1, 2가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문래동4가에 편입한다.</p> <p>○도림동 688번지 북단을 연하는 선을 기점으로 하여 694의 2호 북단을 연하는 선의 남쪽지역 중 문래동 1, 2, 4가에 편입되는 지역을 재영나 지역을 문래동5가에 편입한다.</p> <p>○도림동 688번지 북단을 연하는 선을 기점으로 하여 694의 2호 북단을 연하는 선의 북쪽지역을 문래동6가에 편입한다.</p> <p>○당산동 관할구역 중 121의 169번지, 121의 172번지, 121의 194번지, 121의 195번지, 121의 196번지, 121의 197번지, 121의 302번지, 171의 3번지를 영등포동8가에 편입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[신설]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○신길동 관할구역 중 188의 1번지, 188의 242~247번지, 188의 249~262번지, 188의 264~266번지, 188의 499번지, 188의 502~503번지를 영등포동에 편입한다.</p>